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KOTRA 지사화 사업」 연계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공고

해외시장 개척 단계에 있는 우리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 출원 법률서비스 지원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7.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지원 개요

□ **총괄/주관기관:** 지식재산처/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협력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목적

- 해외시장 개척 단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해외 지재권 출원**에 필요한 법률서비스 **비용 지원**
 - 1)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대상(아래 두 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 또는 수출 준비 중인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1) 사업을 신청할 때 '대상제품 수출여부'는 지원받고자 하는 국가(지원 희망국)에 대한 수출 상태(수출 중, 수출 준비 등)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
 - 2) 제출한 수출단계 증빙자료에 지원 희망국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자료는 수출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음(수출단계 판단기준은 지원사업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파일 참조)
- '26년 KOTRA 지사화사업 참여기업 중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희망' 응답기업
 - * KOTRA 본사 및 해외무역관이 사전 파악한 수요기업('26.7.)으로 제한 운영

□ **지원대상국가:** 해외 지식재산센터(10개소) 관할 총 **40개 국가**

해외 IP센터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	베이징	광저우	일본	유럽	호치민	방콕	뉴델리	멕시코시티
지원국가 (40개국)	미국 서부, 캐나다	미국 동부	중국 북부지역, 몽골	중국 남부지역 (홍콩, 마카오, 대만)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이탈리아, 튀르키예,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베트남,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인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UAE, 사우디, 카자흐스탄, 이집트	멕시코, 브라질,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에콰도르
	2개국		3개국		1개국	10개국	5개국	5개국	7개국	7개국

2. 지원내용

□ **해외 지재권 출원 지원(1개社 당 최대 2건까지 지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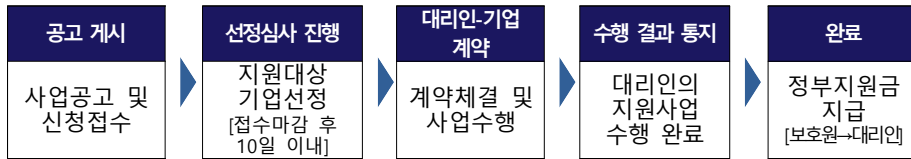
- 현지에서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시 발생 비용 및 절차 지원 (기 출원 건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 * 상표·디자인은 1국가·1표장·1상품류를 1건으로 취급하며, 국가, 표장, 상품류 추가 시 각각 개별 신청 필요(첨부된 니스(상표)/로카르노(디자인) 분류표를 참조하여 상품류 및 지정상품 지정 필수)
 - ** 특허출원 신청 시 지원 희망국가(신청 국가) 언어/법적요건을 갖춘 명세서 제출 필수

<해외 출원 지원 세부 지원내용>

지원 내용	정부지원금 지원한도(건 최대)	정부 지원 비율	비고
■ 특허·상표·디자인출원 비용지원 - 해외 40개국에 출원하는 해외 현지 특허·상표·디자인출원 비용 일부 지원(관납료 포함)	특허 ~\$3,000* 상표, 디자인 ~\$2,000*	(중소) 50% (중견) 50%	▶ 2건/1社, 총 \$3,000 한도

* 권역·국가별 건당 정부지원금 지원 한도 상이('붙임1' 참조)
(지원한도는 총 계약금액이 \$6,000일 때 50%인 \$3,000까지 지원을 의미)

□ 지원절차



- ① 지원사업 신청전에 '수행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서 최종제출 가능
- ② 지원기업은 수행대리인과 계약 체결시 수행대리인에 기업부담금 입금(증빙자료 개별 제출)
- ③ 지원사업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파일 확인 필수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6. 7. 7.(화), 13:00 ~ 7. 24.(금), 18:00
- * 마감 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 및 시스템상 최종 제출되어야 인정됨
- 결과 통보: 최종 제출 후 10일 이내(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지원시스템(www.ip-navi.or.kr/ipcenter)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

□ 수행대리인 지정방법

기업이 직접 수행대리인 POOL(별첨1, 시스템 참조)*내 해당 국가수행 대리인과 업무수행 여부, 비용견적 등 세부 사항 협의(필수)**

* 수행대리인POOL 외 대리인과 사업 수행 불가함

** 직접 문의가 어려운 경우 해외IP센터(붙임2)에 수행대리인 정보 문의 가능

- 기업과 수행대리인 간 상기 비용견적 등 협의가 완료되면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지원시스템에서 사업신청 시 해당 수행대리인을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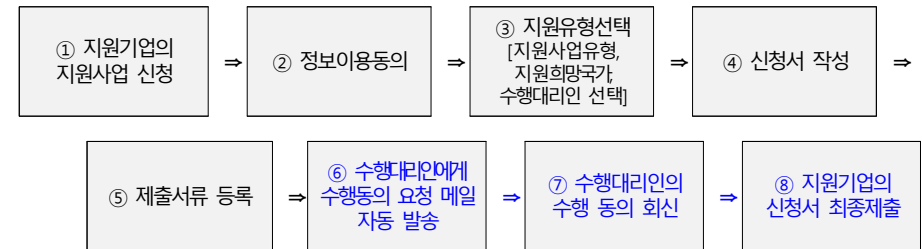
□ 수행대리인 동의방법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지원시스템의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제출서류 등록 후 [다음] 버튼 클릭 시, 지정된 수행대리인에게 자동으로 수행동의 요청 메일이 발송됨

* 수행대리인이 동의 응답한 시점 이후부터는 신청서 수정 불가

** 세부적인 신청 방법은 온라인 매뉴얼 참고

링크: https://www.ip-navi.or.kr/ipnavi/static/html/benefit_manual/benefit_manual.html



[기업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명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신청서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지원시스템을 통한 지원사업 신청 동의 및 사업 신청서	○		온라인 입력
추가 제출 서류	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 유효기간 확인 필수('26.4.3. 이후 발급)	○		시스템 파일 업로드
	2. 사업자등록증(명원)	○		
	3. 지원 희망국에 대한 직접 수출 또는 간접적인 수출 계획·준비 증빙 자료 - 지원사업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 특허 지원 희망국가 언어/법적요건을 갖춘 특허 명세서 - 분쟁·침해 초기대응: 현지 위조상품 유통현황, 지재 권침해 증빙, 경고장·소장, 지재권 관련 계약서 작성·갱신 요청 등	○		
	4. 해외출원 희망 지재권이 국내 선출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의 등록증(원부) 또는 출원증명원(공고)/ 해외등록권리 증빙		○	
	6. 국세납세증명서 * 유효기간 확인 필수	○		
	7. 지방세납세증명서 * 유효기간 확인 필수	○		

붙임서류는 pdf, jpg, zip, egg, jpeg, png, hwp, docx, pptx, xlsx 형태 가능
(여러 파일을 함께 올리고자 할 경우 zip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4. 세부운영계획

□ 선정기준 및 선정평가 결과

- (선정기준) ‘붙임3’의 선정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 * 신청 건수가 예산 한도를 초과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심사 진행 후 선정되며 이후 접수 건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결과확인) 회원정보에 기재된 이메일로 심사결과 통보

□ 지원기업-수행대리인 간 계약 체결

- 지원기업은 선정결과 발표일로부터 3주 이내에 수행대리인과 계약체결 실시(일정 도과 예상 시 반드시 보호원으로 사전연락 필요)
 - 지원기업과 수행대리인은 계약 조건, 계약 기간* 및 과제비용 등을 충분히 협의하고, 해외지식재산종합지원시스템 상 전자계약서 작성
 - * 지원기업과 수행대리인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함
 - 지원기업은 수행대리인과 계약서 날인 및 기업부담금을 수행대리인에게 입금(정해진 기한 내 미납부시 선정 취소 가능)
- 지원기업은 계약 체결 이후 지원사업 시스템에 기업부담금 입금 증빙자료 업로드(별도 안내 메일 발송 예정)

□ 사업결과 확인 및 정부지원금 지급

- 수행대리인이 사업수행 완료*시 지원기업 및 보호원에 통지하고, 보호원은 사업결과 내용을 확인 후 수행대리인에게 정부지원금 지급
 - * 지원기업에서 미동의 시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정부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 수행대리인은 반드시 지원기업 선정 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업 완료 필요(미완료 시 정부지원금 지급 불가)

□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이후라도 지원제한 조건 사유 해당, 신청요건 위반사항, 기타 심각한 신의성실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 지원 거절 가능

□ 문의처

- 대표번호/이메일: 1600-9099, ipcenter_help@koipa.re.kr
- 해외지식재산센터 10개소 연락처: ‘붙임2’ 참고

- [붙임]
1. 국가별 지원한도
 2. 해외지식재산센터 연락처
 3. 선정심사 기준
 4. 지원제한 조건

붙임1
권역·국가별 지원한도

권역	국가	지원한도(USD), 건당		
		상표	디자인	특허
북미	미국	700	1,500	2,500
	캐나다			
중남미	멕시코	400	450	750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동북아	일본	500	500	1,500
	중국	300	300	1,000
	(마카오)			
	대만	400		1,000
	(홍콩)	650	650	1,200
	몽골	500	800	1,300
동남아/오세아니아	베트남	300	500	1,500
	필리핀	300	500	1,500
	호주	500	1,500	2,000
	뉴질랜드	500	1,500	2,000
	싱가포르	500	450	1,500
	태국	500	700	1,500
	인도네시아	400	600	1,500
	말레이시아	400	500	1,500
	캄보디아	400	500	1,500
	미얀마	400	500	1,500
	인도	400	200	1,500
서남아/중동	방글라데시	300	200	1,500
	파키스탄	300	200	1,500
	UAE	2,000	1,000	3,000
	사우디아라비아	2,000	1,000	3,000
	카즈흐스탄	300	200	1,500
	이집트	300	200	1,500
	유럽통합	1,000	600	2,500
유럽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예			
	스웨덴			
	러시아			

붙임2
해외지식재산센터별 연락처

센터명	전화번호	이메일
로스앤젤레스 지식재산센터	+1-323-424-4005	la_ipcenter@koipa.re.kr
	070-5150-2844	
워싱턴 D.C. 지식재산센터	+1-571-459-2501	washington_ipcenter@koipa.re.kr
	070-5150-2832	
베이징 지식재산센터	070-5150-2818(2814)	beijing_ipcenter@koipa.re.kr
광저우 지식재산센터	070-5150-2804(2806)	guangzhou_ipcenter@koipa.re.kr
일본 지식재산센터	+81-3-6362-0500	tokyo_ipcenter@koipa.re.kr
	070-5150-2787	
유럽 지식재산센터	+49-69-5050-346-30	frankfurt_ipcenter@koipa.re.kr
	070-5150-2782	
호치민 지식재산센터	070-5150-2779(2781)	hochiminh_ipcenter@koipa.re.kr
방콕 지식재산센터	070-5150-2754(2774)	bangkok_ipcenter@koipa.re.kr
뉴델리 지식재산센터	+91-11-4230-6300	newdelhi_ipcenter@koipa.re.kr
	070-5150-2753	
멕시코시티 지식재산센터	+52-55-5920-2730	mexicocity_ipcenter@koipa.re.kr
	070-5150-2746	

붙임3

선정 심사기준

□ (1단계) 지원기업 적격여부 사전심사 → 미충족시 지원대상 탈락

- 수출 또는 수출예정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
- 지원 제한조건(별첨2 참조)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연도 최대 지원 건수 범위 이내일 것

□ (2단계) 지원기업 선정평가 기준 → 고득점순 우선 지원대상 선정

평가항목	평가 항목	배점	평가기준 및 점수
기업 규모	중소 중견 기업 구분	20	■ (소기업) 20점 (중기업) 15점 (중견기업) 10점
지원 항목	지원 신청 배경 및 수혜 이력	25	■ 분쟁집해 초기대응 지원: 10~20점 · 해외 IP침해분쟁(경고장 접수, 침해피해 등) 대응 법률서비스: 20점 · 해외 IP침해 분쟁 예방 법률서비스: 10점 · 해외 수출 관련 법률서비스(라이선스 계약, NDA, 지재산 관련 내용 검토 등): 10점 ■ 해외 지재산 보호 지원: 5~10점 · (상표·디자인 10, 특허 10, 세관 등록 5) ■ 법률서비스 수혜 이력: 0~5점 · 신청연도 및 직전 2년 이상 해외IP센터 지원(법률서비스, 출원) 실적 이 없는 경우: 5점 · 신청연도 및 직전연도에 해외IP센터 지원(법률서비스, 출원)실적 이 없는 경우: 3점 · 신청연도에 해외IP센터 지원실적이 없고, 그전에 지원실적이 있는 경우: 0점
수출 기여	실제 수출 여부, 수출 계획의 구체성 등	15	■ 법률서비스 신청국가에 대한 해외 현지 수출실적이 명확히 존재 하는 경우: 15점 ■ 수출 실적이 명확하지 않으나 수출 예정이거나 수출계획이 구체적인 경우: 10점 ■ 수출실적도 명확하지 않고, 수출여부도 불명확한 경우: 0점
지원 적합성	기업 활동과 지재산의 관련성 및 지원시기 적절성 등	20	■ 기업의 영업활동과 지재산의 관련성,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 10점 ■ 현지점을 기준으로 지원시기 적절성, 시급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10점
지원 효과성	지원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및 경쟁력 향상 등 예상 성과	20	■ 지원 결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경쟁력 제고, 사업활동 안정성, 분쟁예방 등에 대한 정성적 평가: S(20), A(15), B(10), C(5)
총 계		100	

붙임4

지원제한 조건

지원제한 조건

- 휴 · 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단, 금융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할 수 있다.
- 분쟁 대상 해외기업이 한국기업이거나 한국 국적의 개인인 경우
- 분쟁 대상 해외기업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한국기업이 외국에 설립한 법인·지점·사무소(이하 ‘한국기업 지사’라 함) 또는 투자지분이 높은 법인인 경우
-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신청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 사업 지원으로 한국기업 또는 한국기업 지사가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 기타 지원사업이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 등의 지원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신청 기업이 타인의 상표, 특허 또는 서비스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다만, 타인과 신청 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를 제외함
- 종전(최근 3년)에 지원받은 사항과 동일 사안의 신청인 경우